

##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81. 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6장 및 학생준칙 제3장에 따라 본교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단체”란 본교 학생회 및 학생회 산하 부서 또는 각 중앙동아리를 말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의2(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단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3조(등록요건)** 단체는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62조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30명 이상의 정회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8.10.31.>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단과대학 5개학과 이상의 정회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5.10.26.>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위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종교분과는 학생준칙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선교봉사처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4조(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① 단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승인신청서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3. 회칙
4.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5. 발기인 명단
6. 발기인총회 회의록

② 단체등록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로서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급 자치기구장(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학생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2. 단체등록 서류를 접수한 각 급 자치기구장은 자체 심의를 거쳐 학생취업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과대학학생회 산하 단체의 경우 소속 학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3.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신규단체는 가등록, 기존단체는 재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4.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신규단체는 1년간 가등록되며, 그 기간 중 건학이념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제5조(효력)** 제4조에 따라 학생단체 등록을 필한 단체는 학생취업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2.5.18>

**제6조(임원선출, 임기, 결원보고)** ① 각 단체의 임원은 소속 단체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②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 임기와 같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학생취업처장 또는 소속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10.26.>

**제6조의2(각 자치기구장 피선거권)** ① 각급 자치기구장(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학생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이수학기가 8학기 미만인 자

2. 학점은 전(全)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지 아니한 자

4. 범죄전과 경력이 없는 자

5. 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학생회 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10.26.]

**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어야 하며, 단체로부터 추대받아 학생취업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18, 2012.7.22>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 이상의 단체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의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⑤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후 10일 이내에 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⑥ 학생취업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8조(재정)** ① 단체운영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② 학생취업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단체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1. 본교 설립목적과 교육목적과의 부합성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3. 최근 2년간 행사실적
4.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5. 해당년도 행사계획의 건전성

③ 삭 제 <2015.10.26.>

**제9조(단체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는 제11조에 따른 집회신청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과대학 산하 단체는 집회신청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③ 단체의 집회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 학장의 확인과 학사지원실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④ 야간 옥외집회시에 햇불,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사전에 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⑤ 삭 제 <2015.10.26.>

⑥ 삭 제 <2015.10.26.>

⑦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⑧ 각 단체는 행사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단과대학 산하 단체는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제10조(집회신청서 제출절차)** ① 학과(전공)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학생대표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학생대표가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동아리)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 단체대표가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가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0.26.]

**제11조(집회신청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단체의 정기(월례 및 주례) 집회는 계획서를 제출하

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는 3일전에(교외집회는 5일전) 집회신청서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③ 체육행사는 행사개최 7일전까지 행사계획서, 예산서, 주요 내용 요약서, 홍보물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한 집회신청서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10.26.>

④ 학술, 예술행사는 행사 개최 10일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대본과 그 요약서, 지도교수의견서 및 홍보물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한 집회신청서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⑤ 타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25일 전에 행사계획서, 예산서, 학생대표 서약서, 참가 교 동의서 그리고 홍보물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한 집회신청서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제12조(게시물 부착 및 검인)** 본교 학생 및 단체의 집회에 관한 게시물 부착은 학생준칙 제4장 및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13조(간행물 발간허가신청)** 본교 학생 및 단체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14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회에 등록된 단체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개시 30일전에 계획서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③ 봉사활동 시 사회봉사 학점의 인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장을 경유 사회봉사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④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회봉사센터의 지시나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⑤ 봉사활동 시 학교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활동은 할 수 없다.

⑥ 봉사활동 완료 후 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봉사센터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⑦ 삭 제 <2015.10.26.>

**제15조(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 학생준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단체
2. 교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정 2015.10.26.>
3.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4. 단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목적외 활동을 하는 단체
5.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단체

6. 재등록 단체의 경우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단체 <신설 2015.10.26.>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③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사유서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제16조** 삭 제 <2015.10.26.>

**제17조(세부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